

농협개혁 토론회
(충북, 전남 토론 내용)

'09 농협법 개정과 4대 쟁점사항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09년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로 농업계가 시끌 벅적 한 가운데, 이번 농협법 개정의 주요 목적과 쟁점사항을 소개함으로서 한농연 대응논리를 설명하고, 지역 회원 및 임원의 올바른 이해와 동참을 도모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첫번째 목적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다. 이는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기구화 등을 통해 중앙회장과 직원 중심의 중앙회가 회원농협을 지배하는 기형시스템에서 회원농협의 대표인 조합장과 전문성을 지닌 사외이사 중심의 집단지배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부실한 지역조합의 정리를 통해 조합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 농산물은 소비지 시장을 대형유통업체에 잠식당하였으며 ‘울며 겨자먹기’로 농산물을 출하하고, 산지의 공동계산·공동출하의 미비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심지어 각 지역조합끼리 각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갖고 소비지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판이다. 만약 농협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와 경영체로 농산물을 집중시킨다면, 우리나라 소비지 뿐 아니라 수출시장에서도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런 배경 속에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와 보완은 필요하지만, 중앙연합회는 회원 설문과 정책부회장들의 의견개진 활동을 통해 정부의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농협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한농연의 입장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농협법 개정, 지금이어야 하는 이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수입개방화가 계속되고, 국제 경기침체 등으로 농산물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농업·농촌은 갈수록 피폐화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을 대변하고, 권익향상 및 생산 농산물을 안정되게 판매하여 할 농협은 前중앙회장의 비리와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무색하게 만드는 중앙회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 농협노조와 조합장의 자기 밤그릇 챙기기로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야 할 농협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태생적 한계는 있다지만, 농협중앙회에 있어서는 2만 여명에 달하는 농협 직원들 중 1만 8천 여명의 직원이 신용사업에 매달리고 있고, 경제사업은 농업인을 평계로 한 신용사업의 특혜를 위해 이익금으로 어쩔 수 없이 유지해 나가는 눈에 가시가 된지가 오래다.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마트 중심으로 재편된 소비시장, 세계 금융·경제위기로 인한 금융업 여건 악화 등 급변하는 내·외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급한 전환이 필요하다. 개별 농가로부터 시작되는 조직화를 전제로, '지역'과 '품목'은 물론 농관련산업 전후방을 아우르는 강력한 시장·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농업·농촌·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확장함으로써 '식량주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국민경제'를 지향하는 '운동성을 지닌 전문사업체'로서 농협을 개혁·정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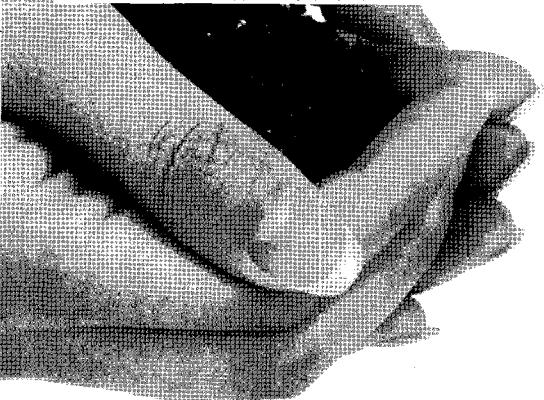
사실 이토록 농협중앙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갈수록 피폐화되어 가는 농업환경 속에서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서

는 농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 개정을 통해 농협의 개혁작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농협은 조합장, 직원, 중앙회, 조합원 등 농협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개정되지 못한 경험을 거쳐 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업은 대책없는 FTA 추진, 농산물 생산비 폭등 등 벼랑 끝에 몰려 있어 농업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고통분담이 절실했고, 지난 12월 농협에 대한 전 국민적 규탄과 최근 우리 농업을 둘러싼 위기들은 농협개혁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농업인의 요구 전체를 담지는 못해 향후에도 정부와 농협, 농민 단체의 끊임없는 보완과 모니터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농업 관련 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개정안을 도출하였고,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또한 농협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한 바 있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효과에 협동조합의 개혁을 주도적으로 앞자리 온 한농연과 전농이 방향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4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중앙회장 선거 간선제도와 권한축소”의 배경과 한농연의 찬성에 대한 이유

현행 중앙회장 선거는 1,187개 조합장의 직선제로 선출되기 때문에 중앙회장이 유권자인 읍면 단위 개별 조합의 조합장의 표심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무이자·저리자금 등의 무원칙·불투명한 지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 자생력 강화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조합장은 중앙회장의 무이자·저리자금에 목 매달고, 중앙회장은 차기 선거를 의식해 조합장의 눈치를 보는 정치공학적 이해타산에만 매몰되어 근본적인 농협개혁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이다.

때문에 무이자·저리자금은 국회의원 및 농민단체가 지원 현황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여태 정식 공개된 바 없으며,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영의 자립화를 위해 마땅히 정리되었어야 할 부실 조합의 진통제 역할만 하고 있다. 또, 시도 교육감 및 국회의원 선거 등 타 공직선거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유능한 후보자가 선출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며, 불필요한 시간·인력·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지역의 조합장 선거이지만, 2008년 정기국정감사 중 농식품위 소속 황영철 의원의 국정질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414개 조합의 직선 선거 중 280개 조합(63%), 2007년도 116건 중 83건(72%), 2008년도 9월말 기준 128건 중 69건(54%)의 불법선거로 얼룩질 정도로 불법선거

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와 관련, 중앙회장의 권한이 축소될 경우 중앙회가 직원 이익 위주로만 운영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으나, 현 농협법 상 중앙회 이사 중 회원조합 조합장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35명의 중앙회 이사 중 조합장 이사는 24명 정도이다. 이와 더불어 이사들이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장 1인 지배구조 체제에서 다수의 이사가 경영에 책임지고 참여하는 집단 지배구조로 전환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조합선택권 부여”의 배경과 한농연의 찬성에 대한 이유

농협법에 규정된 읍면별 종합농협 체제로는 경제사업이 활성화된 인근 조합에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조합의 육성에 한계점이 있다. 미국의 선키스트 등 서구 농협은, 조합원이 원하는 출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조합간 선의의 경쟁을 적극 유도하고 공동선별·계산제를 통한 조합원의 경제적 권리 확대에 노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조합장과 농협노조는 구조조정을 우려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해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으나 조합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야 말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에는 조합간 과도한 경쟁이 있을 수 있으나, 조합원들이 경쟁력을 갖춘 조합을 선택할 수 있어 조합이 농업인을 위한 조합으로 바뀌려는 노력을 한층 증대시키는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한농연 회원 3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조합선택권과 관련해 222명(62.5%)이 찬성을 하였고, 주요 찬성이유는 우량 및 서비스가 좋은 농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하는 차원에서 조합원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반면, 주요 반대 이유는 경영수지가 적은 조합이 몰락할 수 있고, 지역간 위화감 때문에 조합원의 권리 행사 및 조합원과 조합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일반적 논리였지만, 그러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합의 시군단위 통폐합이 있어야 하고, 현 체제의 자율적인 통폐합으로는 조합장과 노조의 반대로 이루기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였다(82.4%).

“인사추천위원회”의 배경과 한농연의 찬성에 대한 이유

대표이사 추천권이 농협중앙회장에게 집중되어 민주적·투명 경영 달성을 가로막고 있다. 현행 농협법에는 대표이사 추천권이 농협중앙회장에게 있어,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 달성에 한계점을 노출한다. 즉,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서 법적으로는 농협중앙회의 경영에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나, 대표이사 추천권을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협중앙회 인사·경영·집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전문적·체계적인 책임경영체제를 운영해야 하나, 농협중앙회장에게 주어진 인사·업무조정권으로 직간접적인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장은 궁극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인사·경영·집행의 책임을 져야 하며, 민주적·투명 경영 달성을 장애가 된다.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농민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인사의 구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농민단체 몫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1,500억 이상 규모 조합장 비상임화”의 배경과 한농연의 찬성에 대한 이유

우리나라의 조합은 전국 1,187개(2007년 12월 현재) 중 조합장을 직선·간선·호선으로 선출(직선이 1,155개 조합, 97.1%)하고, 대부분 조합은 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다(1,134개 조합, 95.6%).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1개 조합이 상임이사를 두고 있으나, 상임이사제에 따라 조합장을 비상임화 한 조합은 53개 조합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상임이사 제도’를 운용 중인 일선조합의 경영성과는 전체 평균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임이사제도가 정착할 경우 그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 분상임이사 도입 조합전체조합 평균경제사업 평균성장률 05.9%(평균대비·0.8%) 05.1% 예수금 평균성장률 11.9%(평균대비·1.8%) 10.1% 경영 평가 결과 1등급률 65.5%(평균 대비·5.7%) 59.8%

※수치는 2007년 기준 성과임. 08년 결산은 현재 진행중임.

한농연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유로 들어 1,500억 이상 조합의 상임이사 의무도입과 조합장의 단계별 비상임화 도입을 찬성한다.

- ① 조합 규모 확장과 복잡한 경영구조로 인한 전문경영 요구 확대
- ② 직선 조합장의 한계로 표수를 감안한 선거 중심의 조합경영을 탈피하기 힘듦.

③ 비상임조합장이라고 해서 조합원의 복지, 지원, 정책 활동은 계속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경영방침에 대한 불만은 비상임조합장과 농민이사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조율이 가능

④ 현 농협법에 따라 상임이사 도입 조합의 경우 경영평가를 통해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해임권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경제사업의 소홀, 수익위주의 경영 등은 이를 통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음.

다만,

- ① 현 상임이사가 전문경영인이 아닌 전·상무의 최종 진급 자리로만 인식되는 점(조합원의 총체적 불신, 전·상무 등의 정치·경제적 야망).
- ② 상임이사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이사 및 대의원의 자질 확충과 평가제도(다면평가제 등)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③ 상임이사를 도입하는 조합도 상임 조합장 수준에 육박하는 보수 및 실비가 지급되어 2종으로 고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점 등은

정관 및 재규정의 개정을 통해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구체화, 상임이사 경영평가제도의 보완, 비상임조합장에 대한 실비 지급을 통해 법개정 후 보완이 따라야 할 것이다. ☺